간호학과 실습 운영 규정

제정 2016.02.04.
개정 2017.06.01.
개정 2018.12.28.
개정 2020.03.01.
개정 2022.07.08.
개정 2022.10.0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간호학 실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무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간호학과 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습의 구성) 간호학과 실습은 교내실습, 임상실습, 학교현장실습 등으로 구성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내실습”이란, 간호전공교과목과 관련하여 교내에서 실시하는 실습으로 기본간호학실습, 핵심기본간호술실습, 통합(시뮬레이션)실습, 자율실습 등을 말한다. <개정 2017. 6. 1, 2022. 7. 8.>
2. “임상실습”이란, 임상실습 운영지침에 의해 임상실습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실습으로 성인간호학실습, 모성간호학실습, 아동간호학실습, 정신간호학실습, 지역사회 간호학실습, 간호관리학실습 등을 말한다. <개정 2017. 6. 1, 2022. 7. 8.>
3. “학교현장실습”이란, 대학에서 교육실습 이론교육을 이수한 후 초등·중등·특수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실습을 말한다. <개정 2017. 6. 1.>

제2장 교내실습

제4조(교내실습 운영 및 관리) ① 교내실습은 학점 당 실습시간을 1:2로 편성하고, 학기 당 15주 이상을 운영하여야 한다. 단, 학점으로 개설되지 않은 교내실습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교내실습은 실습지도교원 1인당 학생 20명 이하로 배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2. 7. 8.>

③ 임상실습의 일부를 시뮬레이션 실습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에 따라 최대 6학점 이하로 한다. <개정 2020. 3. 1, 2022. 7. 8.>

④ 각 실습실은 1인 이상의 관리책임교수를 두어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⑤ 실습실 관리책임교수는 시설물 안전, 폐기물 관리, 청결, 기자재 및 비품의 수급과 관리의 책임을 진다.

제5조(교내실습지도교원의 자격기준) 교내실습지도교원은 간호사면허증소지자,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과 임상경력 3년 이상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 2022. 7. 8.>

제6조(자율실습) ① 간호학 실습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규 시간 이외의 시간에 “자율실습”을 운영하되, 실습실 개방시간은 주당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자율실습”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율실습 개방 시간 중 전담인력을 상주하도록 한다. <개정 2022. 7. 8.>
③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으로 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자율실습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

제3장 임상실습

제7조(임상실습지도교원 및 임상실습현장지도자의 자격기준) 임상실습지도를 위해 임상실습지도교원과 임상실습현장지도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그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상실습지도교원”은 대학이 임용한 교원(전임·겸임·초빙교원 및 시간강사 등)으로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과 임상경력 3년 이상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8.>
2. “임상실습현장지도자”는 임상실습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대학이 위촉한 현장실무자로서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과 임상경력 3년 이상의 자격을 충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임상실습 운영 및 관리) ① 임상실습은 학점 당 실습시간을 1:3으로 편성하고, 학생 1인당 최소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8.>
② 임상실습은 실습단위 당 학생 수를 8명 이하로 배정하여야 한다.
③ 임상실습지도교원의 실습지도시간은 학생실습시간을 기준으로 교과목별 최소 10% 이상이어야 한다.
④ 전임교원은 임상실습 교육에서 이론과 연계된 실습교과목의 일부 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22. 7. 8.>

제9조(출결) ① 결석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하게 결석, 지각, 조퇴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임상실습지도교원과 임상실습현장지도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결석일수가 총 실습일수의 1/4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과목 실습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22. 7. 8.>

제10조(임상실습평가) ① 임상실습평가는 실습교과목별 임상실습지도교원 및 임상실습현장지도자가 담당한다.
② 임상실습평가는 지식, 기술, 태도 영역을 포함하여 평가도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전공실습 과목별 특성에 따라 평가배점 및 평가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임상실습기관 선정) 실습기관의 선정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임상실습기관 선정기준을 따르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대학 현장실습 관련규정 및 「간호학과 임상실습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1조의2(원거리 실습지원) 원거리 임상실습기관의 경우 학과에서는 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지원으로 소정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6. 1.>

제4장 학교현장실습

제12조(학교현장실습 운영) ① 학교현장실습은 전일제로 실시하는 경우 1학점 당 2주로 하며,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공휴일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단, 실습시간이 연속되지 않은 학교현장실습은 1학점 당 8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② 기타 학교현장실습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5장 기타

제13조(실습지침서) ① 실습지침서는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본 대학 담당교과목 교수가 작성한다.
② 실습지침서는 학생용 실습지침서와 지도자용 실습지침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14조(실습실 및 실습기자재 관리) ① 실습실 및 실습기자재관리 기준은 본 대학 및 학과의 관련 규정이나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8.>
② <삭제 2018. 12. 28.>

제6장 안전 및 인권 <신설 2018. 12. 28.>

제15조(실습 안전관리) ① 실습시 안전사고 예방 및 학생 보호에 대한 교육을 각호에 따라 매학기 마다 실시한다. <신설 2017. 6. 1.><개정 2018. 12. 28.>
1. 학생의 안전교육은 매학기 재학생 3시간 이상, 신입생 2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 실습담당교수와 실습실관리자의 안전교육은 매학기 3시간 이상(신규 대상자는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② 임상실습 시작 전에 안전사고 예방 및 학생 보호를 위해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한다.
③ 실습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다.
④ 실습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실습기관, 학과와 학생간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한다.
⑤ <삭제 2018. 12. 28.>

제16조(안전사고 비용청구)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비용 발생 시 실습생은 학교의 실습보험 규정에 따라 청구서류를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한다.
[본조신설 2018. 12. 28.]

제17조(실습 학생의 인권보호) ① 학과는 실습교육(교내실습 포함)에 참여하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습 전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실습 중 어떠한 상황에서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며, 신체의 침습적 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③ 실습 중 성희롱, 성추행 등 인권을 침해받을 경우 단호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비상연락망 체계에 따라 보고한다.
④ 학생들의 인권 침해로 보고된 사안을 교수회의를 거쳐 추가조치가 필요한 경우 후속조치를 취한다.
⑤ 실습생은 자신의 인권과 더불어 동료학생, 실습기관 대상자 등 타인의 인권을 종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8.]

제18조(실습 운영의 변경)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발생으로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상적인 실습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과의 협의를 통해 실습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운영방법은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신설 2020. 3. 1.>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실습(안전 및 인권) 비상연락망 체계 <개정 2022. 7. 8, 2022. 10. 6.>

간호학과 임상실습 비상연락망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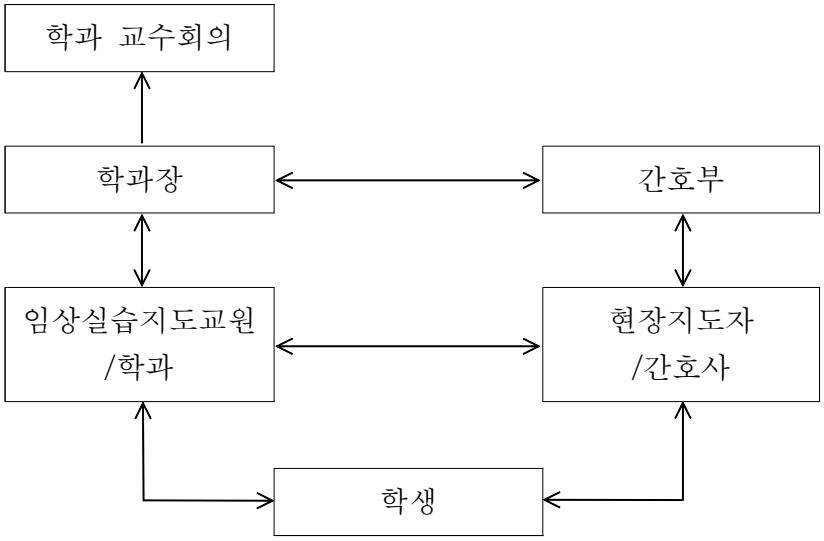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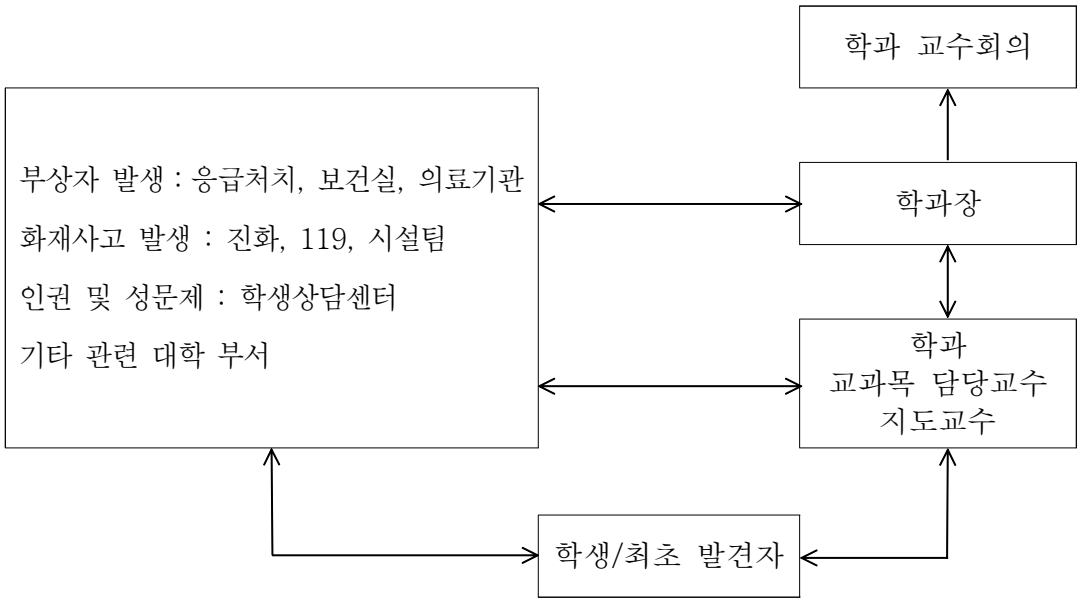
간호학과 교내실습 비상연락망 체계